



제433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중보건 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대상 변경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5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0.
3. 회부연월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35조의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중보건 의사 등¹⁾의 신상변동 통보 사유를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공중보건 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 <u>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1)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 공중보건 의사는 현행법 제2조제1항제11호²⁾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짐.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³⁾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공중보건 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직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중보건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⁴⁾에 따라 보건복지

2)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공중보건 의사”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종사명령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 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

부장관은 이들의 신분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⁵⁾에서는 이러한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불응사유 신분박탈 현황 >

2021	2022	2023	2024	2025
1	1	2	5	-

□ 한편,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신규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직무교육 불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려는

을 이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5) 「병역법」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6. 1. 19.>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현황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211	1,318	1,035	1,050	1,114	716	743

□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직무교육 불응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병역법」에도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불응이 곧바로 신분 박탈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병역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제도운영 및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가짐.

□ 다만,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병역법」에 따른 같은 보충역 중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⁷⁾에 대해서도 「병역법」 제34조의3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만 직무교육 불응에 따른 신분 박탈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6)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56호)

7)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있음8).

제34조의3(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의사·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경우, 「병역법」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대상도 직무교육 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운영의 일관성 및 법령 체계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이 법률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의결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농식품부 소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무관(법무부 소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

문 의 처
02)6788-5308